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 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4월 13일
-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청(2019. 8.)
- 추진배경(문제점):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단기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등 신고에 제한을 초래
 - 개선요청: 국민의 신고 활성화,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~15년으로 설정
- 나. 부조리행위 신고기한*이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징계시효**와 중대 범죄(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)의 공소시효***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폐지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* 보상금 지급 신고기한(現 조례):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

** 일반 부조리: 3년 /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(금품, 향응 등): 5년

*** 「형법」상 뇌물죄: 7년,

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상 수뢰액 3천만원 이상: 7~15년

다.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(2020.1.)

- 부조리신고 종결사유 및 신고자(협조자 포함) 신변보호 조치 마련

4. 주요내용

가.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가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근거 법률을 명시(안 제2조제1호나목)

-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에 따른 →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

나. 공무원 등에게 알선·청탁을 받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,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3호다목, 별표 1)

- 다른 공무원의 → 다른 공무원 등의

다.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기한 조문 삭제(안 제4조)

-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 → 삭제

라. 부조리신고에 대한 종결사유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(안 제6조제3항)

-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. [신설]

마.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마련(안 제7조제4항)

-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

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[신설]

바. 공무원 등의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감이 공무원 등(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, 교육공무직원)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으므로,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감경(면제 포함)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함(안 제7조의2제1항)

-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→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(면제 포함)을 요청할 수 있다.

사. 일부 미비사항(맞춤법)을 정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4조제3항)

- 별지 제3호서식 → 별지 제3호 서식

아. 별표의 제목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변경하고, 부조리 신고유형 및 보상금액 추가하여 부조리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함(안 별표 1)

-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→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
-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(신설)
 -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: 3천만원 이내(신설)
 -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: 3백만원 이내(신설)
- 신고금액의 지급기준 → 보상금액의 지급기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.
-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, 학교법인 관계자,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까지로 확대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삭제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부조리신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음.
- 또한,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 안 제7조의2에서는 교육감이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